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조 례

고양시 조례 제2678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고양시 조례 제2679호	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
고양시 조례 제2680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고양시 조례 제2681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	16
고양시 조례 제2682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고양시 조례 제2683호	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8
고양시 조례 제2684호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고양시 조례 제2685호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고양시 조례 제2686호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고양시 조례 제2687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 개정조례	43
고양시 조례 제2688호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47
고양시 조례 제2689호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51
고양시 조례 제2690호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고양시 조례 제2691호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차 례

고양시 조례 제2692호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66
고양시 조례 제2693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규 칙

고양시 규칙 제1169호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76
고양시 규칙 제1170호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80
고양시 규칙 제1171호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86
고양시 규칙 제1172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0
고양시 규칙 제1173호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3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3-406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일산지구 외 16개 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98
고양시 고시 제2023-407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110
고양시 고시 제2023-40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652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 계획인가 고시	112
고양시 고시 제2023-411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116
고양시 고시 제2023-412호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변경(2차)인가 고시	117
고양시 고시 제2023-413호	도로명주소 고시	123

공 고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3-629호	공인 신조 공고	125
---------------------------	----------	-----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 조례 제2678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시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직무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시 및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육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제13조에 따른 고양시 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실무에 관한 식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6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反)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1. 제4조에 규정된 위원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질병,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9조제3항에 따라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8조(겸직금지) 위원회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을 감사, 수사 또는 조사한 경우
5. 해당 사안에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사안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조사 및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 위원이 2명일 경우에는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을 위하여 고양시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고충민원 처리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3. 시 소재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는 교수
 4. 시 소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추천이 끝나면 해당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및 공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제16조(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감사관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감사관 박 원 빈
	팀 장 성 명	조 사 2 팀 장 이 정 만
	담 당 자 성명 · 전화	박 규 동 (031-8075-2147)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안이유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시정 전반의 투명성 및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직무, 구성 및 임기와 신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 조례 제2679호

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관련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2.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제9조(민원상담인의 위촉 등) 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봉사 정신이 투철하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3. 자원봉사 분야 및 행정실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민원여권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민원여권과장 홍 호 조
	팀 장 성 명	시민봉사팀장 김 선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여 진 031-8075-2457

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안이유

- 민원실의 운영 및 민원상담인에 대한 위촉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나.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5조).
- 다. 민원실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라. 민원실 민원상담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 조례 제2680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 “청년 “ ” 을 “ “청년” ” 으로, “만 18세” 를 “18세”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 “무주택 청년가구 “ ” 를 “ “무주택 청년가구” ” 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경우” 를 “해당할 때”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경우” 를 각각 “때”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부적당하다고” 를 “적당하지 않다고” 로, “경우” 를 “때” 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업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2.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일자리정책과
입 안 자	과 성 장 명	일자리정책과장 왕 연 우
	팀 성 장 명	청년정책팀장 이 현 주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소 연 031-8075-2725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등 지원 규정을 마련함(제15조제3항).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 조례 제2681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1호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해”를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만족도 평가 “”를 ““주민만족도 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실적 서류평가 “”를 ““실적서류 평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3항 중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않도록 해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스크, 기타”를 “마스크 등”으로, “책임성을 포함한다”를 “책임성을 대상으로 한다”로 한다.

① 평가대상은 고양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평가대상 업체”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앞의 “제2장 평가절차”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전달해야 하며, 평가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변경된 평가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에는”을 “평가대상 업체를 평가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평가계획에는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로, “하고,”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로, “통지 받은”을 “받은”으로 한다.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별표 1에 따라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등을 실시하고, 제11조에 따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의 평가 자료를 활용하거나 평가대상 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명”을 “4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명”을 “3명”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12명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제11조 앞의 “제3장 평가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제4호 중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를 “계약해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사직하고자 하는”을 “사직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야기하는”을 “일으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판단될 때”를 “판단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부적당하다고”를 “적당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를 “소집하려고”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장 및 관련 평가대상”을 “공무원 및 평가대상”으로 한다.

-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평가대상 업체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 앞의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을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등)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대행계약의 해지 및 영업정지 등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제목 중 “대행계약 명시”를 “대행계약서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속적”을 “지속적인”으로, “명시하여야”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 적어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표창, 포상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에 대한 적용례) 제20조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실시하는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자원순환과장 안 명 렬
	팀 장 성 명	자원순환정책팀장 신 각 식
	담 당 자 성명·전화	강 준 구 031-8075-2683

[별표 2]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등 급	평가점수	조치사항
		대행기간 중
탁 월	90점 이상	1위, 2위, 3위 시장 표창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개선명령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
부 진	60점 미만	영업정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현장평가단의 구성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현장평가단에 민간전문가(2명) 및 시민단체원(1명)을 증원하여 구성함(제10조제1항).
-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제2부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변경함(제13조제2항).
-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가 부진한 업체에 대한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기준을 현행 환경부 지침에 맞춰 변경함(제20조 및 별표 2).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 조례 제2682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단체포함”을 “단체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재”를 “기록”으로, “다만,”을 “이 경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처리하고자”를 “처리하려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체결한자에 대하여는”을 “체결한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관외”를 “고양시 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배출하여야 한다.”를 각각 “배출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 자에 대해서”를 “않은 자에게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5조, 제16조, 제17조 규정의”를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으로, “용이한” 을 “쉬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용이하고” 를 “쉽고”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을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로,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언어” 를 “받아”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치하여야 한다.” 를 “설치할 것”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하여야 한다.” 를 “할 것”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익월” 을 “다음 달” 로, “통보하여야 한다.” 를 “통보할 것”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어서는 아니된다.” 를 “주지말 것” 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취할” 을 “할” 로, “하여야” 를 “해야” 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처리하고자” 를 “처리하려고” 로, “차등하여” 를 “차등을 두어” 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재활용하고자” 를 “재활용하려고”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조하고자” 를 “건조하려고” 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를 “신고증명서를 발급할 것”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활용하고자” 를 “재활용하려고” 로, “제출하여야 한다.” 를 “제출할 것”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행하여야 한다.” 를 “이행할 것”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다음해” 를 “다음 해” 로, “제출하여야 한다.” 를 “제출할 것”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신고필증을” 을 “신고증명서를” 로, “제출하여야 한다.” 를 “제출할 것” 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처리여부” 를 “처리 여부” 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아니한 자” 를 각각 “않은 자” 로 한다.

제19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제목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제14조제4항 관련)”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 관련)”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폐수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처리하는 경우

적용대상	수수료(원/톤)
음식물처리시설 반입 음폐수	70,280원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앞면) 중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의1제1항”을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과장 성명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팀장 성명	음식물자원화팀장 주은주
	담당자 성명·전화	김재영 031-8075-2698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17년 이후 동결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반입 음폐수 수수료를 인상함(별표 1).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 조례 제2683호

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고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② 주택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양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재난대응담당관
입 안 자	담 당 관 성 명	재난대응담당관 박 성 완
	팀 장 성 명	자연재난팀장 정 일 윤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지 나 031-8075-2994

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안이유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존 주택 건축물에 대한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및 차수판 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우리시의 기존 주택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
- 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시 대상 및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양시장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 조례 제2684호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취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해야 한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것
2. 캠핑장 내 안전사고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화기(火氣) 및 가스용품 사용하지 말 것
3. 사망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전기용품, 화기용품을

사용하지 말 것(다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용품은 사용가능)

4. 캠핑장 내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반입하지 말 것(다만,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캐러밴 안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가능)

5. 캠핑장 내에서는 폭죽, 풍등(風燈)의 사용과 판매를 하지 말 것

② 관리자는 시설이용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설치하고자”를 “설치하려고”로, “사전에”를 “미리”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준용”을 “적용”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만3세”를 “3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전략산업과
입안자	과장 성명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팀장 성명	킨텍스지원팀장 양상운
	담당자 성명·전화	황규선 031-8075-3515

[별표 2]

사용료 반환 기준(제11조 관련)

시설명	사유	반환 기준		비고
		취소 시기	반환금액	
캐러밴, 오토캠핑장, 일반 야영장 등	1.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	전액	
		사용예정일 1일 전	100분의 90	
		사용예정일 당일	100분의 80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	전액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20% 배상	
	3.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 우	전액		

※ 비고

표 이외의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 배상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소비자 보상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정부합동 평가지표)

□ 주요내용

- 가. 관리자의 귀책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 보상 기준을 마련함(별표 2).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 조례 제2685호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축·수산물”을 “농축수산물”로, “앞당기는데”를 “앞당기는 데”로, “농·축·수산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을 “농·축·수산업인”으로, “시상하는데”를 “시상하는 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특용작물부문
2. 원예작물부문
3. 축수산·친환경·신기술부문
4. 여성농업인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 및 축산·수산업”을 “농축수산업”으로, “농·축·수산업”을 “농축수산업”으로, “기여”를 “이바

지”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농업인”을 “농·축·수산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년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1. 농업인: 친환경농업, 첨단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등 과학영농과 과학적인 사양관리, 가축개량, 증식, 어획량 제고 등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농업인, 축산업인 및 수산업인
2. 생산자 단체: 과학 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 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작목반 등 품목별 생산자 단체로서 작목반,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 영농조합법인, 축산·어촌계 등 농축수산업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단체

제5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항에 따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고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은 위원의 해당 지역 수상 후보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⑥ 심사위원회는 수상자 선정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고양시 농업인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제1항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5조에 따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따로”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수상자에 대하여는”을 “시장은 수상자에게”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업관련”을 “농업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등 지원시”를 “등을 지원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한다.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입안자	과장 성명	농업정책과장 우 제 구
	팀장 성명	농업정책팀장 진 중 구
	담당자 성명·전화	김 희 은 031-8075-4233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고양시 농업인대상의 시상부문과 시상내용을 고양시의 농업 규모와 시상 실적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 농업인대상 수상자 시상부문에서 중복적인 부문을 통합하고 작품의 용도에 따라 재분류함(제3조).
- 나.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수상후보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제1호 및 제2호).
- 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촉 대상을 정비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함(제6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 조례 제2686호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50,000원”을 “7만원”으로, “만 80세”를 “80세”로, “70,000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문화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확대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명이 개정되어 수정함(제3조).
- 나.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대우를 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제7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 조례 제2687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등을 촬영·편집·합성·가공한 성(性)적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유·배포·소지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디지털성범죄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원에 관한 사항
6.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2. 피해자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연계 지원
3.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4.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등)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법 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설명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 및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피해자에게 상담 및 영상물 삭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안자:** 신인선 · 천승아 · 최성원 의원(찬성의원: 고부미 의원 등 16명)

□ 제안이유

-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고양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명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를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로 변경함.
- 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해 규정함(제4조).
- 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해 규정함(제5조).
- 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해 규정함(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 조례 제2688호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보장구(保障具)”란 장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 방향
2. 뇌병변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3. 평생교육 지원
4.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5. 가족의 휴식 지원
6.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保障具) 지원
7.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8. 활동지원인력 지원

9.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10.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1. 의료비 지원
 12.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
 13. 주택개조 및 주택알선 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고양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 제안자: 최규진 · 김미수 · 이종덕 의원 (찬성의원: 조현숙 의원 등 30명)

□ 제안이유

- 뇌병변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로 최근 고령화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있음.
- 뇌병변장애인은 뇌의 기질적인 문제에 따라 운동장애, 감각장애, 언어 및 지각 장애 등 중복 장애 동반율이 상당히 높고 중증의 심각한 장애가 많은 상황임.
- 또한 뇌병변장애인은 발병 시기에 따라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취업, 결혼, 자립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사회참여 활동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좌절감, 무력감 등의 심리적 문제까지 겪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뇌병변장애인의 특수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라.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 조례 제2689호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 수립의 대상이 되는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

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자립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자립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안자:** 장예선 · 이종덕 · 최규진 의원 (찬성의원: 김민숙 의원 등 9명)

□ 제안이유

-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제5조).
- 다. 자립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제9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 조례 제2690호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어린이 보호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과속방지턱 등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장치
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안자:** 안중돈 · 권용재 · 이영훈 의원 (찬성의원: 임홍열 의원 등 7명)

□ **제안이유**

- 어린이 통학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함(제8조의3).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 조례 제2691호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구분한다”를 “구분하며, 시설물의 유형, 부과대상 및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원상복구비(설계도서)”를 “원상복구비(설계도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한요금”을 “대한 요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 경비”를 “사용경비”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을 원인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다만, 계량기 구경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액으로 부과할 때는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 신청으로 협의를 갈음한다.

⑦ 제5조제1항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한다.

제12조와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과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원인에게 환급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정산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징수 할 때는 사유, 산출근거, 절차 등을 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3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원인에게 환급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과오납금을 환급 또는 추가징수 할 때는 사유, 산출근거, 절차 등을 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중 “고양시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으로 한다)”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표 2와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청된 급수공사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제5조제1항 관련)

시설유형별	부 과 대 상	산 출 기 준
주거시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000㎡ 이상)	세대수×세대당 인구수 ¹⁾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ℓ pcd) ²⁾
숙박시설	숙박시설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건축연면적(㎡)×15 ℓ×첨두부하율 ³⁾
의료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건축연면적(㎡)×25 ℓ×첨두부하율
교육연구 및 노유자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건축연면적(㎡)×10 ℓ×첨두부하율
공장시설 및 창고시설	건축연면적 1,500㎡ 이상	사업계획서상 1일 사용량
판매·위락· 근린생활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건축연면적(㎡)×35 ℓ×첨두부하율
그 밖의 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건축연면적(㎡)×15 ℓ×첨두부하율

※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하며, 시설유형의 구분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1) 세대당 인구수: 고양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참조(매년 1월말 현황 기준)

2)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ℓ pcd):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 원단위 적용

3) 첨두부하율: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서 상의 첨두부하율 적용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총자산/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가. 단위사업비는 수도시설 총자산(총공사비)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단,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의 기준점이 모호할 경우 총자산 즉 “총가동설비자산”을 기준으로 단위사업비를 산정한다)
- 2) “총자산”이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의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3) “시설용량”이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의 광역 배분 계약량을 말한다.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ℓ 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 1)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수용인구 × 1인1일 최대 급수량(ℓ pcd)
- 2) 1인1일 최대급수량 =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1인1일 최대 급수량 원단위
 * 1인1일 최대급수량 =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1인1일 평균 급수량 원단위 × 첨두부하율
- 3) 1인1일 평균 급수량 =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1인1일 평균 급수량 원단위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 단위사업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 산정하며, 세부 산출내역은 매년 별도 고시한다.

라. “추가사업비”는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 포함)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마.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제3호

가.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제

(단위 : 천원)

구 분	13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250m/m
원인자 부담금	306	789	1,917	2,447	4,609	9,794	11,967	14,139	28,279	47,515	76,002
급·배수 공사비	실제 소요 공사비										

나. 소규모 공동주택(2세대부터 19세대까지)

원인자부담금 = 수도계량기 최소 구경별 정액제(13m/m) × 세대수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민간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이 설치하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순수한 공공 목적의 건축물(학교, 도서관, 공원, 공공청사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라. 급수장치 개조 등으로 부담금이 추가 발생한 때에는 기 부과된 부담금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마. 부과시기 : 급수공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서

고양시 (주소: _____)의 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원인자(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1조(목적) 본 내용은 상수도시설 신설·증설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시설 공사는 수도법 및 상수도시설 기준 등에 의하여 “갑”의 책임 하에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 부담금은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을”이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 부담금 : 일금 _____ 원

제5조(원인자부담금 납부) ① “을”은 “갑”의 청구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고양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을”의 귀책 사유로 협약을 해지할 때는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갑”의 귀책 사유로 협약을 해지할 때는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제6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비용을 부담한 투자시설은 준공과 함께 고양시 자산으로 귀속한다.

제7조(자료제출) 원인자부담금 부담 협약을 체결할 때 “갑”은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을”에게 발송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시책 및 고양시 방침의 변경
3. 그 밖에 사정으로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한 경우

제9조(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또는 사업 등이 타인에게
명이가 변경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
자”는 “갑”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이견조정)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본 협약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일
일
일

(갑)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인)

(을) 상호

성명(대표자) (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김민숙·김해련·이영훈 의원 (찬성의원: 이해림 의원 등 13명)

□ **제안이유**

- 고양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재정립하여 대체 기준 사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제5조 및 별표 1).
- 나.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함(제6조, 별표 2 및 별표 3).
-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방법과 부과 전 원인자와의 사전 협의에 규정함(제7조).
- 라. 원인자부담금의 정산차액과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처리 방법을 규정함(제12조 및 제13조).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 조례 제2692호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선임 또는 개선(改選)한다.

1. 각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에서 소속 시의원 중 1명씩 추천한 위원 4명
2. 의장이 시의원 중 추천한 위원 2명
3. 고양시의회 부의장이 시의원 중 추천한 위원 1명

- ④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경우 의장이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구성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유지된다.
-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 특별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인사청문)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등) ① 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에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고양도 시관리공사 사장·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고양산업진흥원 원장·고양시정연구원 원장·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장 후보자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특별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질의할 때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서면질의 및 답변의 경우에도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당사자에게 송

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폐회나 휴회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인사청문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의 발언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 또는 증언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요구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이유는 소명해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업무 담당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준용)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제안자:** 박현우 · 고덕희 · 문재호 의원 (찬성의원: 안중돈 의원 등 12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함(제3조).
- 나. 인사청문의 절차, 형식 및 기간에 관해 규정함(제4조부터 제9조까지).
- 다.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에 관해 규정함(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 조례 제2693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을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체육정책과,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을 “체육정책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시민봉사과, 세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시민봉사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경제위원회

가. 일자리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후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구청 사무 중 세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
소농정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킨텍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무 중 환경사업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건설교통위원회

가.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시혁신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구청 사무 중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무 중 교통·도시사업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5호 가목 중 “복지여성국”을 “사회복지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최규진 · 문재호 · 이철조 의원(찬성의원: 이해림 의원 등 16명)

□ 제안이유

- 민선8기 고양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상임위원회 관할 소관 부서를 변경된 행정기구와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획행정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속하는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제3조).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 규칙 제1169호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제안서평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호의”로, “고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평가위원(후보자)에”를 “평가위원(후보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관리 한다”를 “등록·관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종료될때”를 “종료될 때”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3분의 2 이상” 을 “평가위원 7명 이상의” 로, “개회” 를 “개의(開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의할” 을 “부치는” 으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를 “배부해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안서를 제출한 자” 를 “제안서 제출자” 로, “결정하며” 를 “결정하되” 로, “다른” 을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으로, “청취할” 을 “들을” 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듣거나 질의할 수 없다.

제6조제1항 중 “범위 내에서 고양시장” 을 “범위에서 시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표(별지 제3호서식)” 을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 로 한다.

제7조 중 “평가위원에 대하여” 를 “평가위원에게” 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로 한다.

제8조 중 “운영에 관하여” 를 “운영에”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생년월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학력사항란 및 자격증보유현황란 중 “취득년월일” 을 각각 “취득 연월일” 로 하며, 기타사항란의 “기타사항” 을 “그 밖의 사항” 으로 하고, “200” 을 “20” 으로 한다.

생년월일	남□ 여□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계과
입 안 자	과 성 명	회계과장 고 민 정
	팀 성 명	계약1팀장 이 무 근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연 희 031-8075-2514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춰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촉 대상자 중 “조경·건축·디자인 등의 전문가”를 삭제함(제2조제3항).
- 나. 제안평가위원회 의사정족수를 “7명 이상”으로 변경함(제5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 규칙 제1170호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를 다음 연도 본예산안 편성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다만, 확정된 이후에도 차량정수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기한을”을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차량정수의 범위에서 기한을”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아니할” 을 “않은” 으로 한다.

제14조 중 “아니하고는” 을 “않고는” 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본문 중 “아니되며” 를 “안 되며” 로,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 을 “않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차량 10대 이하를” 을 “차량을 10대 이하로” 로, “아니할” 을 “않을” 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관리) ① 다인승 승합차량(중형·대형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 지원을 받으려는 부서는 해당 차량의 운행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미리 충분히 검토한 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인승 승합차량 운행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인승 승합차량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배차를 승인해야 한다.

1. 국가, 경기도, 시 또는 시 산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공성 행사에 따른 인원 및 물자 수송
2. 업무수행에 따른 직원교육 및 행사
3. 긴급한 재해복구지원·구호·자선적 행사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하는 행사
4.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행사 또는 후생복지 부서에 등록된 직원 동호회 행사(전국· 시도· 시군구 대회 및 시에서 주최하는 대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제2항 중 “전일” 을 “전날” 로 한다.

제25조 중 “연1회” 를 “연 1회” 로 한다.

제28조제11호 중 “아니한” 을 “않은” 으로 한다.

제30조제6호 중 “피해자·가해자·사상자” 를 “피해자·가해자·사상자” 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 구입 중이거나 교체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배정 또는 교체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재산관리과
입안자	과장 성명	재산관리과장 김 학 배
	팀장 성명	차량관리팀장 박 동 각
	담당자 성명·전화	허 승 부 031-8075-2548

[별표 2]

공용차량의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임시차량을 포함한다)

가. 전용, 의전용 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규모 또는 유형별	
		대형·중형·소형·경형· 다목적승용차	비 고
시 본청	6대	6대 • 시장 전용 1대 • 부시장 전용 2대 • 의전용 3대	본청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3급 이상 공무원일 경우에는 전용차량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구청	3대	• 구청장 전용 1대	
사업소	-	-	
시의회	2대	2대 • 의장 전용 1대 • 의전용 1대	

나. 업무용 차량 기준정수

규모 또는 유형	배정대상 및 대수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 승용차	1부서(과, 담당관) 및 동(행정복지센터)별 1대 배정 원칙
	1부서(과, 담당관) 및 동(행정복지센터)별 5개 팀 초과 시 1대 추가 배정
	1팀 인원이 5명 초과 시 차량총괄부서와 협의하여 5명당 1대 추가 배정

2. 승합, 화물차량 기준정수(임시차량을 포함한다)

규모 또는 유형	배정대상 및 대수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승합차·화물차	동(행정복지센터)별 1대 배정 원칙
	실·국·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중 현장업무 위주의 부서는 차량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배정

3. 특수차량 기준정수(임시차량을 포함한다)

규모 또는 유형	배정대상 및 대수
청소차, 살수차, 구급차, 크레인트럭 등 특수용차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를 기준정수로 책정하고 신규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량 증감 등을 고려하여 배정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기관별 기준정수 등 행정현실을 반영한 규칙 개정으로 공용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본예산안 편성 전까지 다음 연도의 차량정수를 확정하도록 규정함(제5조).
- 나. 신규차량의 교체 및 임시차량 정수 배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7조 및 제9조의2).
- 다. 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0조의2).
- 라. 공용차량 기준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별표2).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 규칙 제1171호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운영하여야”를 “운영해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회피하여야”를 “회피해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사망하였을”을 “사망했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비밀을 요하거나”를 “비밀인 경우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부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함)” 을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 를 “통보해야” 로 한다.

제10조 중 “업무담당 팀장” 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으로 한다.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로 한다.

제12조 중 “규정” 을 “규칙” 으로 한다.

별표 2-2쪽 사목 가점부여항목란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가점부여항목	1.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유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단기보호, 주야간보호)노인복지시설에 한정하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은 가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	
----------------------	---	----------	--

※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2.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4.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신청 및 신고

소관부서		노인복지과
입안자	과장 성명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팀장 성명	노인요양팀장 김정아
	담당자 성명·전화	박승원 031-8075-3268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2023년 6월 22일부터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CCTV 설치 법정 의무 시설을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CCTV 설치 법정 의무 시설을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별표).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 규칙 제1172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함에 있어”를 “지원할 때”로 하고, 같
은 조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그
간”을 “그 간”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함에 있어”를 “지원할 때”로 하고, 같
은 조 제2호 중 “교육경비의 집행에 있어”를 “교육경비를 집행하는 데
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7월 말”를 “7월
31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
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들에
게”를 “위원에게”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할”을 “미리 통지하지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유한”을 “거친”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산)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정산 서류를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경비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2. 보조사업 세부추진실적: 별지 제5호서식
3. 보조금 세부집행내역: 별지 제6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평생교육과
입 안 자	과 성 장 명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김 보 경
	팀 성 장 명	교육협력팀장 이 승 연
	담 당 자 성명·전화	여 인 찬 031-8075-2273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인건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현행 규칙의 인건비 지원 사업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각급 학교에 보조하는 교육지원 사업 중 교직원 인건비 항목을 삭제함 (제2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 규칙 제1173호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심사기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부문별 공적심사 평가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식량·특용작물부문: 과학·기술영농을 통한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비의 절감과 브랜드의 개발 등으로 고품질의 고양식량 및 특용작물의 생산성 증대에 공헌한 정도
2. 원예작물부문: 화훼·채소·과수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고품질로 생산성향상과 수출농업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 및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원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축수산·친환경·신기술부문: 과학적인 사양관리, 가축개량, 증식, 어획량 제고 등으로 축수산 발전에 이바지했거나 친환경농법 및 신기술 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공헌한 정도

4. 여성농업인부문: 여성 농업인의 권익향상과 합리적인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촌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정도

제4조제2항 중 “규정한” 을 “따른” 으로, “조사·확인하는데” 를 “조사·확인하는 데” 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서식) 후보자 추천에 따른 서식 및 심사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심사표: 별지 제3호서식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입 안 자	과장 성명	농업정책과장 우 제 구
	팀장 성명	농업정책팀장 진 종 구
	담당자 성명·전화	김 희 은 031-8075-4233

[별표]

부문별 공적심사 평가기준

부 문	평 가 내 용	배점
식량·특용작물	· 재배기술 및 생산성 향상	20
	· 영농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	15
	· 지역사회(농업) 공헌	15
	· 그 밖의 우수사례	10
원예작물	· 재배기술 및 생산성 향상	20
	· 유통 및 판매 우수 사례	15
	· 지역사회(농업) 공헌	15
	· 그 밖의 우수사례	10
축수산	· 사육기술 및 생산성 향상	20
	· 유통 및 판매 우수 사례	15
	· 지역사회(축산) 공헌	15
	· 그 밖의 우수사례	10
친환경농업· 신기술	· 친환경, 신기술농업 실천 내용	20
	· 친환경농업 보급 및 홍보	15
	· 지역사회(농업) 공헌	15
	· 그 밖의 우수사례	10
여성농업인	· 농어업경영실적	20
	·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 기여도 (단체 활동 실적 등)	15
	·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교육실적 마을봉사 실적 등)	15
	· 그 밖의 우수사례	10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심 사 표

□ ○○○○ 부문(성명)

구 분	공 적 내 용	배점	평점
소 계		60	
현지조사 결과		40	
합 계		10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인)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개정에 맞춰 농업인대상 심사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 농업인대상 심사기준을 조례 개정에 맞춰 정비함(제3조).
- 나. 평가기준과 공적 심사 서식을 신설함(제3조, 별표 및 별지 제3호서식).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함.

고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일산지구 외 16개 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고 양 시 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변경**

■ 일산지구단위계획

- 1)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

- (1) 시장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시장	소매시장	마두동802	1,842	감)1,842	-	고고제69호(99-09-15)	-
폐지	3	시장	소매시장	장항동895	1,875	감)1,875	-	고고제69호(99-09-15)	-
폐지	4	시장	백화점	마두동797-2	5,712	감)5,712	-	고고제69호(99-09-15)	-
폐지	5	시장	대형점	장항동755	8,097	감)8,097	-	고고제69호(99-09-15)	-
폐지	7	시장	백화점	주엽동22	3,719	감)3,719	-	고고제69호(99-09-15)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장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소매시장	• 도시계획시설 폐지 (A : 1,842㎡)	• 시장으로서의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실여건에 부합되도록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3	소매시장	• 도시계획시설 폐지 (A : 1,875㎡)	
4	백화점	• 도시계획시설 폐지 (A : 5,712㎡)	
5	대형점	• 도시계획시설 폐지 (A : 8,097㎡)	
7	백화점	• 도시계획시설 폐지 (A : 3,719㎡)	

■ 화정지구단위계획

1)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

(1) 시장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1	시장11	소매시장	화정동 973	2,929	감)2,929	-	고고제69호(99-09-15)	-
폐지	12	시장12	소매시장	화정동 970	4,920	감)4,920	-	고고제69호(99-09-15)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장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시장11	• 도시계획시설 폐지 (A : 2,929㎡)	• 시장으로서의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실여건에 부합되도록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12	시장12	• 도시계획시설 폐지 (A : 4,920㎡)	

■ 능곡지구단위계획

1)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

(1) 시장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0	시장10	시장	행신동 941	4,730.6	감)4,730.6	-	고고제69호(99-09-15)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장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시장10	• 도시계획시설 폐지 (A : 4,730.6㎡)	• 시장으로서의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실여건에 부합되도록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기존누락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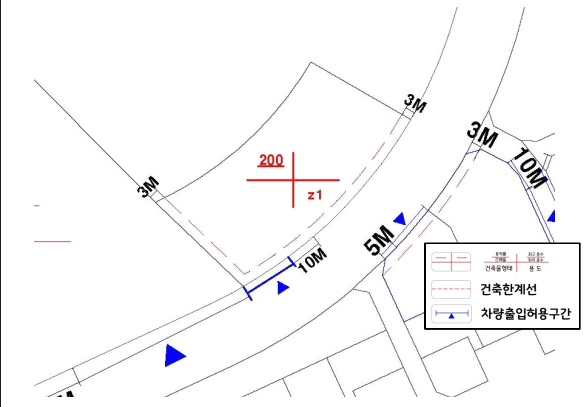
■ 일산지구단위계획

1) 상업시설용지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21,245	21,245	-
일상2	16	3,71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22 일원	-	증)3,719	3,719	-
일상3	14	1,84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02 일원	-	증)1,842	1,842	-
	15	1,87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5 일원	-	증)1,875	1,875	-
	16	5,71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7 일원	-	증)5,712	5,712	-
중상1	63	8,09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5 일원	-	증)8,097	8,097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 일산지구단위계획 (건축선)

구분	기 정	변경(안)
마두동 810		

■ 한국국제전시장 1·2단계 (건축물에 대한 용도)

(1) 전시지원시설 및 활성화시설 (특별계획구역)

- 기 정

구분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허 용 용 도	불허용도
S1 (특1-1)	대화동 2307-12	업무 시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	■ 숙박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타목(기원에 한함), 파목(살내 낚시터 제외), 하목(금융업소, 사무소에 한함), 더목, 러목에 해당하는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서커스장은 제외), 나목(예식장, 회의장에 한함),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판매시설(대형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제외) - 운동시설 중 가목(살내낚시터 제외), 다목 - 위락시설 중 가목, 나목 -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 나목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업무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차목(장 의사 제외), 타목 (기원에 한함), 파목(살내낚시터 제외), 하목(금융업소, 사무소에 한함), 더목, 러목에 해당하는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서커스장은 제외), 나목(예식장, 회의장에 한함),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판매시설(대형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마목 - 운동시설 중 가목(살내낚시터 제외), 다목 - 위락시설 중 가목, 나목	지정 및 허용 용도 이외의 용도
			※ 업무시설 : 오피스텔 이외 업무시설 지상층 연면적이 12.5% 이상이어야 함. ※ 숙박시설 : 관광호텔 지상층 연면적이 70% 이상이어야 함.		

- 변경

구분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허 용 용 도	불허용도
S1 (특1-1)	대화동 2307-12	업무 시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	■ 숙박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타목(기원에 한함), 파목(실내 낙시터 제외), 하목(금융업소, 사무소에 한함), 더목, 러목에 해당하는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서커스장은 제외), 나목(예식장, 회의장에 한함),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판매시설(대형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제외)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낙시터 제외), 다목 · 위락시설 중 가목, 나목 ·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 나목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업무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차목(장 의사 제외), 카목(학원에 한함), 타목(기원에 한함), 파목(실내낙시터 제외), 하목(부동산중개사무소, 금융업소, 사무소에 한함), 더목, 러목에 해당하는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서커스장은 제외), 나목(예식장, 회의장에 한함),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판매시설(대형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마목 · 노유자시설 중 가목(어린이집에 한함)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낙시터 제외), 다목	지정 및 허용 용도 이외의 용도
				※ 업무시설 : 오피스텔 이외 업무시설 지상층 연면적이 12.5% 이상이어야 함. ※ 숙박시설 : 관광호텔 지상층 연면적이 70% 이상이어야 함.	

주1) 면적산정기준은 지상층 연면적 중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주2) 허용용도에는 해당구역의 지정용도를 포함(면적비율 적용안함)

주3) 지정용도 및 허용용도의 비율이 정해진 경우 (ex:업무시설 50% 이상 등)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상층 연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증감 할 수 있음

(2) 복합시설 (별도 비율 없을 시 지정용도는 바닥연면적의 50% 이상) (특별계획구역)

- 기 정

구분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허 용 용 도
C1-1 C1-2 (특1, 특2)	대화동 2701 2702	복합 시설	·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에 한함) (단, 지정용도의 합이 전체연면적의 50% 이상)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바목, 라목(안마원, 산후조리원 제외), 사목 중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장 의사 제외), 파목(실내낙시터 제외), 하목(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매업소 제외), 러목(안마시술소 제외) · 숙박시설 중 가목(생활숙박시설 제외), 나목의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낙시터, 골프연습장 제외) 내지 다목 · 위락시설(바목 제외) · 방송통신시설
			※ 주1)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 지상층 연면적의 25% 이하이어야 함. ※ 주2) 허용용도에는 해당구역의 지정용도를 포함	

- 변경

구분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허 용 용 도
C1-1, C1-2 (특1, 특2)	대화동 2701 2702	복합 시설	•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에 한함) (단, 지정용도의 합이 전체연면적의 50% 이상)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바목, 라목(안마원, 산후조리원 제외), 사목 중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장 의사 제외), 카목(학원에 한함), 파목(실내낚시터 제외), 하목(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제외), 러목(안마시술소 제외) • 숙박시설 중 가목(생활숙박시설 제외), 나목의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 노유자시설 중 가목(어린이집에 한함)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제외) 내지 다목 • 위락시설(가목, 나목, 바목 제외) • 방송통신시설
			※ 주1)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 지상층 연면적의 25% 이하이어야 함. ※ 주2) 허용용도에는 해당구역의 지정용도를 포함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 일산지구단위계획

- 기 정

위치	계획내용
민간부문 및 공공시설 (아파트 및 복합용도 제외)	제 1 편 총 칙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9. “고층부담상형건축물”이라 함은 고층부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고층부(6층이상)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의 변에 대한 단변의 비율이 1/4이상이고, 고층부(6층이상) 건폐율이 40%이하로 제한 적용된 건축물 형태를 말한다.
아파트 복합용도	제 1 편 총 칙 제2조 (시행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④ 복합용도내 아파트 부분의 지침은 복합용도의 일반지침에서 별도로 규정되는 사항 이외에는 아파트의 일반지침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위치	계획내용
아파트 복합용도	제 1 편 총 칙 제2조 (시행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④ 복합용도내 아파트 부분의 지침은 복합용도의 일반지침에서 별도로 규정되는 사항 이외에는 아파트의 일반지침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⑤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계획) 및 조례를 따른다. <신 설>

■ 탄현1·2, 중산지구단위계획

- 기 정

위치	계획내용
상업, 단독, 공동,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용지	제 1 편 총 칙 제2조 (시행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① 시행 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시행 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어지며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지구단위계획상 필요한 내용으로 강요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변 경

위치	계획내용
상업, 단독, 공동,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용지	제 1 편 총 칙 제2조 (시행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① 시행 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시행 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어지며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지구단위계획상 필요한 내용으로 강요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계획) 및 조례를 따른다. <신 설>

■ 탄현1 지구단위계획 (보행자출입구간 허용 결정도면)

구분	기정	변경(안)
탄현동 1483		

■ 성사, 화정, 능곡, 행신지구단위계획

- 기 정

위치	계획내용
민간부문 및 공공시설 조성지침	제 1 편 총 칙 제2조 (시행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③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 변 경

위치	계획내용
민간부문 및 공공시설 조성지침	제 1 편 총 칙 제2조 (시행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③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계획) 및 조례를 따른다. <신 설>

■ 행신2 지구단위계획

- 기 정

위치	계획내용
전범위	제 1 편 총 론 제1장 총 칙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현행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변 경

위치	계획내용
전범위	제 1 편 총 론 제1장 총 칙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현행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계획) 및 조례를 따른다. <신 설>

■ 대화,가좌,풍식사지구단위계획

- 기 정

위치	계획내용
전범위	제 1 편 총 칙 제2조 (시행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① 시행 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어지며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지구단위계획상 필요한 내용으로 강요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변 경

위치	계획내용
전범위	제 1 편 총 칙 제2조 (시행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① 시행 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어지며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지구단위계획상 필요한 내용으로 강요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계획) 및 조례를 따른다. <신 설>

■ 일산2지구 지구단위계획

- 기 정

위치	계획내용
전범위	제 1 편 총 칙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현행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변 경

위치	계획내용
전범위	제 1 편 총 칙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현행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계획) 및 조례를 따른다. <신 설>

■ 삼송 지구단위계획

- 기 정

위치	계획내용
전범위	제 1 편 총 칙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④ 본 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제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 변 경

위치	계획내용
전범위	제 1 편 총 칙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④ 본 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제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⑤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계획) 및 조례를 따른다. <신 설>

■ 원흥 지구단위계획

- 기 정

위치	계획내용
전범위	제 1 편 총 칙 제4조 (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⑦ 본 지침의 시행이후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 변 경

위치	계획내용
전범위	제 1 편 총 칙 제4조 (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⑦ 본 지침의 시행이후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⑧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계획) 및 조례를 따른다. <신 설>

■ 한국국제전시장 1,2단계 지구단위계획 (차량진출입 허용 결정도면)

구분	기정	변경(안)
대 화동 2705		

7.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한국국제전시장 1,2단계 지구단위계획

1)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전시지원시설 및 활성화시설 (특별계획구역)

- 기 정

위치	구분	세부개발계획
S1 (특1-1)	지정용도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
	업무 시설	■ 숙박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타목(독서실 제외), 파목(실내낚시터 제외), 하목(금융업소 및 사무소에 한함), 더목, 러목에 해당하는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서커스장은 제외), 나목(예식장, 회의장에 한함),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판매시설(대형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제외)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 제외), 다목 ○위락시설 중 가목, 나목 -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 나목·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허용 용도	■ 업무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차목(장의사 제외), 파목(실내낚시터 제외), 하목(금융업소, 사무소에 한함), 더목, 러목에 해당하는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서커스장은 제외), 나목(예식장, 회의장에 한함),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판매시설(대형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마목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 제외), 다목 ○위락시설 중 가목, 나목
※ 업무시설 : 오피스텔 이외 업무시설 지상층 연면적이 12.5% 이상이어야 함. ※ 숙박시설 : 관광호텔 지상층 연면적이 70% 이상이어야 함.		

- 변 경

위치	구분	세부개발계획
S1 (특1-1)	지정용도	·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
	업무 시설	■ 숙박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타목(독서실 제외), 파목(실내낚시터 제외), 하목(금융업소 및 사무소에 한함), 더목, 러목에 해당하는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서커스장은 제외), 나목(예식장, 회의장에 한함),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판매시설(대형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제외)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 제외), 다목 - 위락시설 중 가목, 나목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 나목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허용 용도	■ 업무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차목(장의사 제외), 카목(학원에 한함), 파목(실내 낚시터 제외), 하목(부동산중개사무소, 금융업소, 사무소에 한함), 더목, 러목에 해당하는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서커스장은 제외), 나목(예식장, 회의장에 한함),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판매시설(대형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마목 - 노유자시설 중 가목(어린이집에 한함)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 제외), 다목
※ 업무시설 : 오피스텔 이외 업무시설 지상층 연면적이 12.5% 이상이어야 함. ※ 숙박시설 : 관광호텔 지상층 연면적이 70% 이상이어야 함.		

주1) 면적산정기준은 지상층 연면적 중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주2) 허용용도에는 해당구역의 지정용도를 포함(면적비율 적용 안함)

주3) 지정용도 및 허용용도의 비율이 정해진 경우 (ex:업무시설 50% 이상 등)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상층 연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증감 할 수 있음

(2) 복합시설 (별도 비율 없을 시 지정용도는 바닥연면적의 50% 이상) (특별계획구역)

- 기 정

위치	구분		세부개발계획
C1-1 (특1))	지정 용도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에 한함)(단, 지정용도의 합이 전체연면적의 50% 이상)
	복합 시설	허용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안마원 제외), 마목, 바목, 사목 중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장 의사 제외), 파목(실내낚시터 제외), 하목(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제외), 러목(안마시술소 제외) - 숙박시설 중 가목(생활숙박시설 제외), 나목의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제외), 나목, 다목 - 위락시설(바목 제외) - 방송통신시설
			주1)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 지상층 연면적의 25% 이하이어야 함. 주2) 허용용도에는 해당구역의 지정용도를 포함

- 변 경

위치	구분		세부개발계획
C1-1 (특1))	지정 용도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에 한함)(단, 지정용도의 합이 전체연면적의 50% 이상)
	복합 시설	허용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안마원 제외), 마목, 바목, 사목 중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장 의사 제외), 카목(학원에 한함), 파목(실내낚시터 제외), 하목(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제외), 러목(안마시술소 제외) - 숙박시설 중 가목(생활숙박시설 제외), 나목의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 노유자시설 중 가목(어린이집에 한함)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제외), 나목, 다목 - 위락시설(가목, 나목, 바목 제외) - 방송통신시설
			주1)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 지상층 연면적의 25% 이하이어야 함. 주2) 허용용도에는 해당구역의 지정용도를 포함

- 기 정

위치	구분		세부개발계획
C1-2 (특2)	지정용도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에 한함)(단, 지정용도의 합이 전체연면적의 50% 이상)
	복합 시설	허용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안마원 제외), 마목, 바목, 사목 중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장 의사 제외), 파목(실내낚시터 제외), 하목(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제외), 러목(안마시술소 제외) - 숙박시설 중 가목(생활숙박시설 제외), 나목의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제외), 나목, 다목 - 위락시설(바목 제외) - 방송통신시설
			주1)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 지상층 연면적의 25% 이하이어야 함. 주2) 허용용도에는 해당구역의 지정용도를 포함

- 변 경

위치	구분		세부개발계획
C1-2 (특2)	지정용도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에 한함)(단, 지정용도의 합이 전체연면적의 50% 이상)
	복합 시설	허용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안마원 제외), 마목, 바목, 사목 중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장 의사 제외), 카목(학원에 한함), 파목(실내낚시터 제외), 하목(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제외), 러목(안마시술소 제외) - 숙박시설 중 가목(생활숙박시설 제외), 나목의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 노유자시설 중 가목(어린이집에 한함)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제외), 나목, 다목 - 위락시설(가목, 나목, 바목 제외) - 방송통신시설
			주1)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 지상층 연면적의 25% 이하이어야 함. 주2) 허용용도에는 해당구역의 지정용도를 포함

※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고 양 시 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식사교	일산동구 식사동 959-13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별표1의2)에 해당되는 시설물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 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사4교	일산동구 식사동 1340-2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별표1의2)에 해당되는 시설물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 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사6교	일산동구 식사동 959-5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별표1의2)에 해당되는 시설물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 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652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65-1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652호선 외 1개소]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 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65-1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토당동 삼성당취락(소로3-652호선 외 1)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명 : 고양시장(공사과장)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결정			금회시행			비고
	폭원(m)	연장(m)	면적(㎡)	폭원(m)	연장(m)	면적(㎡)	
소로 3-652호선	4.0	46	183.5	4.0	46	183.5	
소로 3-653호선	4.0	34	145	4.0	34	145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라, 바”항과 같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토지조서 (소로3-652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주소	지번	지 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토당동	651-11	도	44	1	국	기획재정부			
2	토당동	665-19	대	30	7	김*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1-**1, **3동 ***2호(행신동, 행신3차에스케이 뷰 아파트)			
3	토당동	665-18	도	38.5	38.5	김*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1-**1, **3동 ***2호(행신동, 행신3차에스케이 뷰 아파트)			
4	토당동	665-9	대	365	5	박*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0, **7동 **4호(행신동, 무원마을)			
5	토당동	665-17	도	85	48	박*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0, **7동 **4호(행신동, 무원마을)			
6	토당동	659-1	대	92.1	53	공	고양시			
7	토당동	665-11	대	838	13	한*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0, **2호(토당동)	고양축산업 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4(성사동)(농곡지점)	근저당 권
8	토당동	665-12	대	317	18	김*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5, ***7동 ***2호(원흥동, 삼송마을15단지 계룡리슈빌)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84(을지로2 가)(농곡지점)	근저당 권

○ 토지조서 (소로3-653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주소	지번	지 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토당동	665-12	대	317	59	김*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5, ***7동 ***2호(원흥동, 삼송마을15단지 계룡리슈빌)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84(을지로2 가)(농곡지점)	근저당 권
2	토당동	665-13	대	357	75	한*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5			
3	토당동	665-5	대	760	11	신*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6번길 *-9(토당동)			
						나*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6번길 *-9(토당동)			
						나*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6번길 *-9(토당동)			

○ 지장물 조서 (소로3-652호선)

구 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토당동	661-18	통신주	-	1EA		
2	〃	665-19	통신주	-	1EA		
3	〃	665-17	담장	H=1.8m, T=10cm	6M	박*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0, **7동 **4호(행신동, 무원마을)
4	〃	665-17	문주	0.5×0.5×H2.0 m	1EA	박*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0, **7동 **4호(행신동, 무원마을)
5	〃	665-9	건물	슬래브조적조	1M2	박*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0, **7동 **4호(행신동, 무원마을)
6	〃	665-17	대문	H=1.8m	1EA	박*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0, **7동 **4호(행신동, 무원마을)
7	〃	665-17	담장	H=1.8m, T=10cm	1M	박*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0, **7동 **4호(행신동, 무원마을)
8	〃	665-11	통신주	-	1EA		

○ 지장물 조서 (소로3-653호선)

구 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토당동	665-12	전력주	-	1EA		
2	〃	665-12	화장실	RC조	4M2	김*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5, ***7동 ***2호(원흥동, 삼송마을15단지 계룡리슈빌)
3	〃	665-13	창고	RC조	8M2	한*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5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고 양 시 장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점용자 및 주소	(점용자) 손기정 기념재단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로 101
점용기간	2023. 11. 19.(일) ※ 총 1일 (08:20 ~ 11:30)
점용장소 및 면적	(점용장소) 고양시 대덕한강공원 일원 (난지교 ~ 방화대교 하부) (점용면적) 22,200㎡
점용목적	‘손기정평화마라톤’ 개최에 따른 고양시 관할 구간 일시적 사용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변경(2차)인가 고시

1. 고양시 고시 제2020-377호(2020. 12. 18.)로 인가되고, 고양시 고시 제2020-396호(2020. 12. 22.)로 (정정)인가되고, 고양시 고시 제2021-225호(2021. 6. 18.)로 (변경)인가 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94번지 일원의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사업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의 변경,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변경)를 각 인가·허가·승인 의제 처리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11. 10.

고 양 시 장

1.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변경)

가. 명칭: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나. 시행기간(기정): 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2개월

나. 시행기간(변경): 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7개월

2. 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94번지 일원

나. 면적: 12,355㎡

3.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변경)

가. 명칭: (주)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주소(기정):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11층(충무공동)

나. 주소(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

4. 존치하는 구역 내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수·보수계획 : 해당사항 없음

5.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 명세와 그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토지명세서(기정)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	지 번	지목	면 적	면적	주소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종류	
1	성사동	394	잡	8,801	8,58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2	성사동	395-38	도로	151	15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3	성사동	396-2	도로	10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4	성사동	396-3	도로	26	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5	성사동	396-5	도로	44	4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6	성사동	396-6	도로	7	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7	성사동	396-8	도로	20	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8	성사동	396-9	도로	105	105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9	성사동	396-10	도로	6	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10	성사동	408-1	대지	2,484	2,48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11	성사동	408-2	도로	374	26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12	성사동	408-5	대지	330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13	성사동	410-20	도로	35	35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14	성사동	410-22	도로	5	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15	성사동	685-3	도로	2,351	30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16	성사동	692-43	구거	324	32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계				14,743	12,355						

가. 토지명세서 (변경)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	지 번	지목	면 적	면적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	성사동	394	잡	8,581	8,581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주)우리은행				변경
2	성사동	395-38	도로	151	15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3	성사동	396-2	도로	10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4	성사동	396-3	도로	26	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5	성사동	396-5	도로	44	4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6	성사동	396-6	도로	7	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7	성사동	396-8	도로	20	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8	성사동	396-9	도로	105	105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9	성사동	396-10	도로	6	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10	성사동	408-1	대지	2,482	2,482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주)우리은행				변경
11	성사동	408-2	도로	374	26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12	성사동	408-53	대지	2	2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주)우리은행				변경
13	성사동	410-20	도로	35	35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14	성사동	410-22	도로	5	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15	성사동	685-3	도로	2,351	30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16	성사동	692-43	구거	151	15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변경
17	성사동	692-67	잡	112	112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주)우리은행				변경
18	성사동	692-68	구거	61	6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변경
계				14,523	12,355						

나. 건축물 명세서 (변경 없음)

일련 번호	소 재 지			건 축 물				소 유 자		비 고
	동	지 번	지목	동	지번	면적 (㎡)	용도	주소	성 명	
1	성사동	408-1	대	성사동	408-1	가-지1	창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장	
						가-1층	사무실			
						가-2층	사무실			
						나-1층	사무실			
						나-2층	사무실			
2	성사동	408-1	대	성사동	407-5	35.85	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	권효진	
3	성사동	408-1	대	성사동	407-8	32.89	근린생활 시설			

※ 향후 시공 중 분할측량 및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편입 면적이 수정 변경 될 수 있음

6. 사업비 (변경) 및 재정지원

가. 총사업비(기정): 281,321백만원

가. 총사업비(변경): 291,552백만원

나. 재정지원(변경 없음): 41,667백만원(국비 25,000 도비 5,000 시비 11,667)

※ 사업시행 과정 등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7. 건축계획 (변경) 및 주택건설계획

가. 건축계획 (기정)

구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규모	건폐율	용적률	용도
획지1	2,339㎡	939.70㎡	15,013.25㎡	지하3층, 지상20층	40.18%	430.50%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획지2	7,741㎡	5,638.68㎡	84,822.75㎡	지하3층, 지상25층	72.84%	699.89%	공동주택,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공영주차장

※인허가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가. 건축계획 (변경)

- 변경 사유: 교통영향평가 이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고시

구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규모	건폐율	용적률	용도
획지1	2,339㎡	937.20㎡	15,013.82㎡	지하3층, 지상20층	40.07%	430.31%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획지2	7,684.48㎡	5,638.68㎡	84,823.61㎡	지하3층, 지상25층	73.38%	706.48%	공동주택,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공영주차장

※인허가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주택건설계획 (변경없음)

공급 구분	주택의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		
				26㎡	36㎡	49㎡
계	공동주택	2	218	30	60	128
분양	공동주택	1	100	-	-	100
임대	공동주택	1	118	30	60	28

8.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95-38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광로3-7호선 외 5개소 조성 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
- 성 명: 주식회사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라. 도로 결정 조서

명 칭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결 정	광로	3	7	40~110	3,288	주간선 도로	대로1-9 성사동653-1	대로1-10 주교동223-1	
금회시행	광로	3	7	3	20	주간선 도로	성사동692-68도	성사동692-68도	
결 정	대로	2	6	30~37	6,492	주간선 도로	대로2-5 행신동845	대로2-11 성사동산18-1	
금회시행	대로	2	6	0.1~1	48	주간선 도로	성사동394잡	성사동394잡	
결 정	중로	2	원7	12~16.4	201	국지 도로	소1-43 성사동407-8	소2-145 성사동404-5	
금회시행	중로	2	원7	3	3	국지 도로	성사동408-1대	성사동408-1대	
결 정	중로	2	191	16	70	국지 도로	광3-7 성사동708도	소1-43 성사동706-5대	
금회시행	중로	2	191	5	64	국지 도로	광3-7 성사동692-43도	소1-43 성사동396-10도	
결 정	소로	1	43	10~18	715	국지 도로	대로3-25 성사동706	대로2-6 성사동410-16	
금회시행	소로	1	43	5~18	180	국지 도로	성사동408-2도	대로2-6 성사동410-22도	
결 정	소로	3	656	3	23	국지 도로	소로1-43 성사동408-1대	성사동408-53대	
금회시행	소로	3	656	3	23	국지 도로	소로1-43 성사동408-1대	성사동408-53대	

마. 사업의 규모

구 분	결정면적(㎡)			금회시행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광로3-7호선	163,478.3	-	163,478.3	61.0	경고제11호(77-01-27)
대로2-6호선	172,649.6	-	172,649.6	21.0	경고제504호(91-12-31)
중로2-원7호선	2,783.0	-	2,783.0	9.0	경고제274호(10-09-06)
중로2-191호선	1,133.5	-	1,133.5	384.0	원당구획
소로1-43호선	10,512.2	-	10,512.2	1,786.0	경고제133호(81-05-13)
소로3-656호선	71.0	-	71.0	71.0	-

9. 기타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은
제제생략

나. 관련도서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간

다. 열람장소

- 고양시청 제3별관 2층 도시정비과(☎031-8075-3174)
-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 소식알림 → 공고알림
→ 행정공고/고시. 끝.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3 등 1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11.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소	도 로 명 주소	도로명주소표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22-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3 (원흥동)	2023-11-10	20090911	고양시의 대표적인 도로로서 고양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10-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로 380 (문봉동)	2023-11-10	20100126	건달산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3-17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136-31 (신평동)	2023-11-10	20000727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414-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396번길 80-58 (오금동)	2023-11-10	20100126	통일로 시점에서 3960m에 위치한 도로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6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432번길 84-3 (성사동)	2023-11-10	20100126	고양대로 시점에서 14320m에 위치한 도로	
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206-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굿산길 6-7 (법곳동)	2023-11-10	20090911	구산-법곳간 도로로 한 자락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58번길 109-6 (관산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58번길 111-2 (관산동)	2023-11-10	20100126	원당로 시점에서 4580m에 위치한 도로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58번길 109-6 (관산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58번길 111-3 (관산동)	2023-11-10	20100126	원당로 시점에서 4580m에 위치한 도로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58번길 109-6 (관산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58번길 111-1 (관산동)	2023-11-10	20100126	원당로 시점에서 4580m에 위치한 도로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지번 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75-4, 274, 275-5, 275-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58번길 109-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58번길 109-6, 111-1, -2, -3	2023-11-10	건축물대장 분리에 따른 변경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75-4, 274, 275-5, 275-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7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458번길 109-6	2023-11-10	건축물대장 분리에 따른 지번변경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75-4, 274, 275-5, 275-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75-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458번길 111-3	2023-11-10	건축물대장 분리에 따른 지번변경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75-4, 274, 275-5, 275-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75-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458번길 111-2	2023-11-10	건축물대장 분리에 따른 지번변경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75-4, 274, 275-5, 275-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75-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458번길 111-1	2023-11-10	건축물대장 분리에 따른 지번변경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폐실건을 고시일자	법정동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굿산길 6-9	2023-11-06	건물 신축	2011-07-29	법곳동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136-31	2023-11-08	건물 신축	2011-07-29	신평동	
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로 380	2023-11-08	건물 신축	2011-07-29	문봉동	

공 고

고양시 공인조례 제7조조에 따라 신조한 공인을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의 명칭 및 인영

구분	공인의 명칭	인영
신조	일산서구자치행정과 수입금출납원인(종)	
신조	일산서구자치행정과 수입금출납원인(횡)	

2. 공인 등록 사유 : 2024년 시민정보화 교육 유료화에 따른
수강료(수입금) 관리

3. 최초사용 연월일 : 2023. 11. 10.

4. 공고자 :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2023. 11. 10.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